

2018평창동계올림픽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안 번호	174
----------	-----

제출연월일 : 2012. 7. 18

제출자 : 이정율 의원 외 5인

1. 주 문

가.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개최를 지원하기 위하여 2018평창동계올림픽지원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나. 활동기간은 2014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2. 제안이유

가.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개최를 위하여 의회차원의 올림픽 성공개최 방안 모색, 현안지원, 역할분담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2018평창동계올림픽지원 특별위원회를 위원 6인으로 구성한다.

3. 참고사항 : 없음

활 동 계 획

1. 활동목적

-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개최를 위한 범군민적 역량결집 및 성공개최 방안 모색, 현안지원, 역할분담 등을 위해
- 의회차원의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집행기관을 비롯한 모든 관련 기관·단체와의 지원 및 협조체계 구축을 통하여 2018평창동계 올림픽의 성공개최를 도모하고자 함.

2. 구성근거

-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동법시행령 제56조
-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1항

3. 활동기간

- 특위구성일로부터 2014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4. 구 성

- 정문섭 의원, 이만재 의원, 유인환 의원, 박종욱 의원, 장문혁 의원, 이정율 의원

5. 운영계획

- 2018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의 성공개최 활동 적극 참여 및 지원
- 의회차원의 동계올림픽 성공개최 방안 모색, 현안지원
- 성공개최를 위한 범군민적 참여분위기 확산운동 전개 등